

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464호)

심사보고서

1998. 3.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2. 21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8. 3. 16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8. 3. 16

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이유

- 그 동안 우리군이 사용해 오던 군기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21세기를 맞아 우리지역의 이미지를 독창적으로 표현한 군기를 새롭게 개발,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일체감 조성과 애향심 고취로 미래지향적인 군의 발전역량을 높이는데 있음.

3. 주요골자

- 현재 사용하는 군기는 도안이 복잡하고 군민에게 친밀감이 없어 우리군의 이미지에 맞게 새롭게 도안하여 사용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현재의 군기는 도안이 너무 복잡하고 예비군상징물과 유사하다는 여론이 있어 군민으로 부터 친근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
- 또한 본 개정안의 군기는 군민으로 부터 의견청취, 보고회,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도안되었으므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희망찬 미래지향적인 21세기 고성군 비전을 부각키위하여 우리지역의 이미지를 독창적으로 표현한 군기로 새롭게 개발 활용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군기개정조례 공포이전에 군기도안을 사용한 이유는

● 답 : 군기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, 기획의 도안개념으로 표지동에 "군기안"으로
확정하여 일시 사용하였음.

6. 토 론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1998. 3. 1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